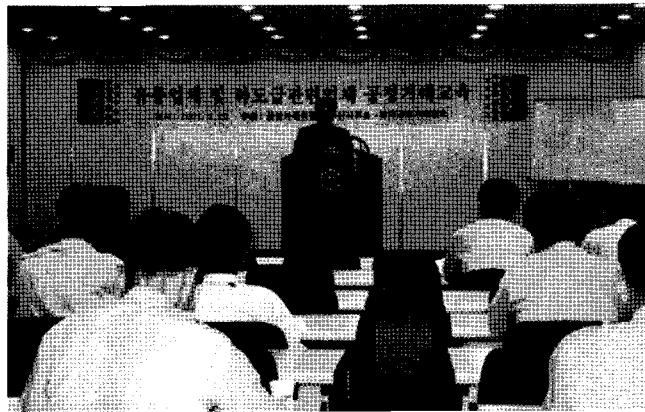


유통·하도급관련업체 지방공정거래교육 및 전자거래관련업체 공정거래교육 실시

본 협회는 지난 9월 20일과 9월 21일 부산·경남 지역과 광주·전남북지역의 유통업체 및 하도급관련업체 임직원 총 16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지방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부산지방교육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 임 송 소비자보호과장



과 강도영 경쟁과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경품고시에 대한 해설 및 추석 성수품 유통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지도·점검계획을 통보하였으며, 하도급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하도급법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지방교육에서는 광주사무소 김오식 소비자보호과장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경품고시, 표시·광고법을 이론과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고, 박제현 경쟁과장은 하도급법령의 내용과 법 위반사건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본 협회는 지난 9월 28일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관련업체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다. 등 교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김재신 서기관, 전자거래보호과 전현식 사무관이 강사로 초빙되었는데, 김 서기관은 공정거래제도의 기본적인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의 사전방지대책으로서 CP(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을 강조, 지난 7월 5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최종안을 업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한 바 있고 ① 최고경영자의 의지 천명, ② 자율 준수관리자의 임명 및 기업 내부감독체계 구축, ③ 업무성격에 맞는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및 공정거래교육 실시 등 핵심요소를 반영한 자율준수규범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 발견시 제재수준을 대폭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사무관은 전자거래관련 고시 및 지침의 주요내용, 통신판매에서 표시·광고법 위반사례, 방문판매법 및 약관법 등을 해설하였다. 특히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였는데, 동 법은 개인정보의 위·변조, 도용 및 제3자로부터의 수집 등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있어 조건 없는 청약철회를 새로이 규정, 그 기간을 7일로 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내용

질문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행위에 있어서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할 경우에 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액은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하고,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8조제5항에 해당되면 동 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지?

응답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할 경우 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에 해당되는데, 경품고시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예상매출액은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에 경품제공예정 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그리고 동 조 제5항에 의하면 창업, 개업 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른 소비자현상경품류에 대하여는 창업일 등으로부터 3개월간은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지만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당한 제공행위로 법 위반이 된다.

질문 A기업에서 On-line부문을 별개의 회사(B기업)로 분사시킨 후 자금, 인원, 거래선 등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지?

응답 사례가 좀더 구체화되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A기업이 분사한 B기업에게 B의 경쟁사업자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처럼 경쟁여건을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함으로써 부당하게 다른 회사를

지원했을 때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에 해당하여 법 위반이 될 수가 있다.

질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안)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7일이내 무조건 환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진 근거는 무엇인지?

응답 전자상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취지이고, 현재에도 일부 쇼핑몰에서는 그 이상의 기간을 무조건 청약철회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질문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제품에 표시하는 것 외에 제품광고에도 표시해야 하는지?

응답 중요한표시·광고사항고시에서는 업종별로 제품표시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제품광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제품광고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질문 온라인 쇼핑몰에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사용소감들을 게재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응답 소비자의 진솔한 사용소감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그것 자체가 표시·광고법의 적용대상은 아니다.

질문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현재 800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보안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있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보안시스템을 필수설비로 하는 것은 하나의 시장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응답 보안시스템을 도입해야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단지 문제 발생시에 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 할인 판매

본 협회에서는 이번 11월부터 각종 공정거래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97년, '9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2001. 1. 16. 개정)과 동 시행령(2001. 3. 27. 개정), 하도급법, 약관법(2001. 3. 20. 개정), 표시광고법, 카르텔일괄정리법 등 공정거래관련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제·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으며, 법률과 시행령 및 관계법령과 해당 심결사례를 연계시킴으로써 법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법규집 할인 판매가	회원사 20,000원
	비회원사 25,000원

*「2001 공정거래관련법규집」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 775-8870~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Internet Homepage(www.ftc.go.kr)에서 구입신청 양식을 Download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관련법규 목차 안내

I. 公正去來法

1.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2001. 1. 16. 개정> 및 시행령 <2001. 3. 27. 개정>
2. 告示 · 指針 등
 - 1) 市場支配的地位濫用行爲의 審查基準 <2000. 9. 8. 제정>
 - 2) 企業結合의 申告要領
 - 3) 企業結合審查基準
 - 4) 持株會社의 關聯規程에 관한 解釋指針 <2001. 5. 2. 개정>
 - 5) 持株會社의 設立 · 轉換의 申告 및 持株會社의 株式所有現況 등의 報告에 관한 要領 <2001. 5. 개정>
 - 6) 企業結合申告規定違反事件에 대한 過怠料賦課基準

- 7) 企業結合關聯是正措置不履行에 따른履行强制金賦課基準 <2000. 12. 23. 제정>
- 8) 共同行爲 및 競爭制限行爲의 認可申請要領
- 9) 入札秩序公正化에 관한指針
- 10) 事業者團體活動指針
- 11) 大規模小賣店業에 있어서特定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 및 基準指定告示
- 12) 景品類提供에 관한不公正去來行爲 類型 및 基準 <2000. 4. 25. 개정>
- 13)並行輸入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行爲의 類型告示
- 14)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있어서의 不公正去來行爲의 基準指定告示
- 15) 大規模企業集團의 不公正去來行爲에 대한審查基準

- 16) 不當한支援行爲의審查指針
- 17) 大規模內部去來에대한理事會議決吳公示에관한規程<2000. 4. 1. 제정>
- 18) 國際契約上의不公正去來行爲등의類型 및基準
- 19) 國際契約審查要請要領
- 20) 公正去來委員會會議運營및事件節次등에관한規則<2000. 12. 5. 개정>
- 21) 法違反事實의公表에관한運營指針 <2000. 6. 13. 개정>
- 2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등에의한利害關係人등에대한經費支給規程
- 23) 過徵金賦課細部基準等에관한告示
- 24) 溝納過徵金에대한加算金料率告示
- 25)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違反行為의告發에관한公正去來委員會의指針
- 26) 公正去來委員會訴訟事件受任辯護士報酬規程
- 27) 還給過徵金에대한加算金料率告示 <2001. 3. 27. 제정>
- 28) 知的財產權의不當한行使에대한指針 <2000. 8. 30. 제정>

II. 下都給法

1.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 및 施行令
2. 告示·指針 등
 - 1) 어음에의한下都給代金支給時의割引率告示<2000. 5. 23. 개정>
 - 2) 製造委託의對象이되는物品의範圍告示
 - 3) 先給金等遲延支給時의遲延利子率告示
 - 4) 建設下都給代金支給保證免除對象告示 <2000. 10. 13. 개정>
 - 5) 下都給去來公正化指針<2000. 3. 29. 개정>
 - 6) 下都給法違反事業者에대한過徵金賦課指針

III. 約款規制法

1. 約款의規制에관한法律

IV. 表示·廣告法

1.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 및 施行令
2. 告示·指針 등

- 1) 不當한表示·廣告行爲의類型 및基準指定告示
- 2) 注油所等石油販賣業에있어서의供給者表示에관한不公正去來行爲의類型 및基準
- 3) 住宅의表示·廣告에관한審查指針
- 4) 環境關聯表示·廣告에관한審查指針
- 5) 商街등의分讓 및賃貸表示·廣告에관한審查指針
- 6) 銀行등의金融商品表示·廣告에관한審查指針
- 7) 保險商品表示·廣告에관한審查指針
- 8) 受賞·認證등의表示·廣告에관한審查指針
- 9) 通信販賣表示·廣告에관한審查指針
- 10) 廣告實證에관한運營指針<2000. 12. 22. 개정>
- 11) 臨時中止命令에관한運營指針
- 12) 重要한表示·廣告事項告示<2001. 5. 2. 개정>
- 13) 電子去來消費者保護指針<2000. 1. 6. 제정>
- 14) 訂正廣告에관한運營指針<2000. 12. 22. 개정>
- 15) 消費者被害一括救濟에관한運營指針 <2001. 3. 31. 제정>

V.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적용 제외되는부당한共同行爲등의整備에관한法律

VI.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 및 施行令

VII. 割賦去來에관한法律 및 施行令

VIII. 公正去來委員會運營

1. 公正去來委員會職制<2000. 2. 28. 개정>
2. 公正去來委員會職制施行規則<2000. 5. 19. 개정>
3. 公正去來委員會委任專決規程<2000. 11. 15. 개정>
4. 地方事務所業務處理指針
5. 公正去來委員會所屬公務員人事管理規程



게시판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집(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집(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집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집, 미국 벤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ortson, IBM, IT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 나라 한국통신(KT)의 「공정경쟁 자율준수편집」과 포항종합제철(POSCO)의 「공정거래 준수편집」, 삼성전자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집」,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